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4 월 30 일 (제 339 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4월 1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강화하며, 연구결과의 공개 매체를 추가하는 한편,
-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외부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을 둠으로써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성별 균형 근거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항)
 - 정책담당 사무관 →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부패유발 요인 방지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안 제7조의2)
 -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한 제척·기피·회피 대상기준 신설
-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항2호)
 - 용역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사전 검토하여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용역 추진의 방지
- 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매체 확대(안 제14조)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충청북도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전국 통합)으로 공개 확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배”를 “위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으로 구성”을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담당 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한다”를 “담당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정책연구과제”를 “정책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연구용역과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제10조제2항 중 “중복되는지 여부를”을 “중복되는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점검 하여야”를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 하거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연구자 선정시”를 “연구자를 선정할 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를 “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략)</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p>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u>위원으로</u> 구성하되, 외부전문가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정책담당 사무관</u>이 된다.</p>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p> <p>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u>긴급을 요하거나</u>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적용범위) ----- ----- ----- -----<u>위반</u>----- -----<u>각 호</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위원으로 성별 균형을</u> <u>고려하여 구성</u>----- -----.</p> <p>④ ----- ----- <u>업무담당</u> <u>사무관</u>-----.</p> <p>⑤ ----- ----- <u>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u> -----.</p> <p>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긴급한 경우나</u>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① (생략) 1. <u>정책연구과제</u> 추진의 필요성 <u><신설></u></p> <p>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평가전문위원(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 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p> <p>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u>중복되는지 여부를</u>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u>점검</u>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u>태만히</u>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0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1. <u>정책연구용역</u> ----- 2. <u>정책연구용역과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u> 3. ----- 4. ----- 5. ----- ----- 6. ----- -----</p> <p>② ----- ----- ----- <u>중복되는지</u> ----- ----- ----- -----.</p> <p>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 ----- ----- ----- <u>점검</u>하여야 ----. ----- ----- ----- -----.</p> <p>② ----- ----- ----- <u>게을리</u> 하거나 ----- ----- ----- -----.</p>

현행	개정안
<p>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용역결과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u>연구자 선정시</u>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p> <p>제14조(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 용역 실명 대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충청북도 홈페이지</u>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 2. (생략)</p>	<p>제13조(연구결과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연구자를 선정할 때</u> ----- ----- -----.</p> <p>제14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 ----- ----- <u>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u>----- -----. ----- ----- ----- <u>예외로 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취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원 중에서 용역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명
3. 지역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2명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7조의 위원회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차별성 검토보고서의 제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존연구용역 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연구진행상황 점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담당관의 연구진행상황 점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구결과의 예비평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 예비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